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16.04.11

개정: 2019.04.09

전부개정: 2019.09.26

개정: 2023.06.28

개정: 2024.12.04

개정: 2025.07.18

개정: 2025.11.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8조에 의거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투자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씨스퀘어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나.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다.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마.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업무 등을 제공한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바. 성과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회사가 받는 금전(법 제86조,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계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을 말한다.

2. 수수료: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계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된다.

다. 투자자문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라. 투자일임수수료: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

제4조(수수료 체계) ①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수수료 지급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기본형 : 기본수수료만 지급
- 혼합형 :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 지급
- 성과형 : 성과수수료만 지급

② 혼합형의 경우 운용성고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고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 부과 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가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투자자문, 투자일임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요구되는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와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1]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 절차) ①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③ 투자자문수수료와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서 혹은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수수료 징수방법) 투자자는 당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의 대가로 제5조제2항에

씨스퀘어자산운용(주)-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의한 기본수수료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납입하며, 성과수수료는 계약 만기일 또는 중도인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성과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한다. 단, 수수료는 만원미만 절사한다.

제8조(수수료의 설명의무) 회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및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영업 등록(인가)을 신청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의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의 2024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씨스퀘어자산운용(주)-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의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의 202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회사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계약과 관련한 수수료 체계는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 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구분	수수료율		비고
	기본수수료	성과수수료	
기본형	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	
혼합형	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성과형	-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지급시기 : 기본수수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성과수수료 (계약만료·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2. 계약 기간 중 계약금액 추가(해지)시 기본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구분	산정방법	
기본형 혼합형	추가계약시	추가계약금액 X (잔존일수 / 365) X 기본수수료율 (납입)
	중도해지시	중도해지금액 X (잔존일수 / 365) X 기본수수료율 (환급)
	※ 윤년인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 ※ 회사가 정하는 별도 중도해지수수료 발생시 차감 후 지급	
성과형	-	

- 지급(환급)시기 : 추가 계약일 또는 중도인출일로부터 7일 이내

3.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성과수수료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구분	산정방법	
혼합형	만기/중도전액해지	[최종평가금액 - ∑(각 계약건별 Hurdle 금액)] X 성과수수료율
	중도일부해지	[중도인출금액 - ∑(각 계약건별 Hurdle 금액)] X 성과수수료율
	- 각 계약건별 Hurdle 금액 = 각 계약금 x (1+수익률 - 연환산목표수익률) - 계약금액이 여러 번 증액된 경우 Hurdle 금액은 입금건별로 각각 계산한 후 합산하며, 중도일부해지시 해지계약금액은 우선 입금된 계약건부터 정산한다.	
성과형	[최종평가금액(중도인출금액) - 계약금액] x 성과수수료율	
- 일부해지시 계약금액 = 중도인출금액 / 전일 기준가격 x 1000		

- 지급시기 : 만기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4. 원금 손실난 상태에서 계약 연장할 경우의 수수료 체계

구분	수수료유형	산정방법	비고
기본수수료	기본형 혼합형	연장계약금액 x 기본수수료율 x (1-손실율*)	*직전 계약기간 손실률
성과수수료	혼합형	[최종평가금액(중도인출금액) - ∑(각 계약건별 Hurdle 금액)] X 성과수수료율	High Water Mark 적용
	성과형	[최종평가금액(중도인출금액) - 계약금액] x 성과수수료율	

※ High Water Mark 기준은 계약기간 중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 연장 시 최초 계약금액이 연장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유지됩니다. 이에 따라 이후 수익 발생 시 성과보수는 최초 계약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시 1) 투자일임 자산 평가금액 전액을 재계약하는 경우

- ① 1 년차 계약
 - 최초 계약금액 : 5 억원
 - 만기 평가금액 : 4.5 억원 (-10% 손실)
- ② 2 년차 재계약
 - 재계약 금액 : 4.5 억원
 - 성과보수 기준금액(High Water Mark) : 5 억원 유지
- ③ 성과보수 발생 조건
 - 2 년차 만기 평가금액이 5 억원 이하 : 성과보수 없음
 - 2 년차 만기 평가금액이 5 억원 초과 :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보수 부과

예시 2) 투자일임 자산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감액)

- ① 1 년차 계약
 - 최초 계약금액 : 9 억원
 - 만기 평가금액 : 8 억원 (-11.11% 손실)
- ② 2 년차 재계약
 - 재계약 금액 : 7 억원
 - 성과보수 기준금액(High Water Mark) : 787,500,000 원
 - 투자일임자산 일부를 감액 후 재계약 하는 경우 당사가 보존해야 하는 손실금액도 감액 비율만큼 감소합니다.
- ③ 성과보수 발생 조건
 - 2 년차 만기 평가금액이 787,500,000 원 이하 : 성과보수 없음
 - 2 년차 만기 평가금액이 787,500,000 원 초과 :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보수 부과

예시 3) 투자일임 자산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증액)

① 1 년차 계약

- 최초 계약금액 : 5 억원
- 만기 평가금액 : 4.5 억원 (-10% 손실)

② 2 년차 재계약

- 재계약 금액 : 6.5 억원 (2 억원 증액시)_
- 성과보수 기준금액(High Water Mark) : 7 억

③ 성과보수 발생 조건

- 2 년차 만기 평가금액이 7 억원 이하 : 성과보수 없음
- 2 년차 만기 평가금액이 7 억원 초과 :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성과보수 부과